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186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3. 17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<2022~2026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>에 따라,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('22.1.13. 시행) 관련 의회사무기구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1,177명에서 1,184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
- 1) 집행기관의 정원: 1,149명 → 1,155명 (증 6)
- 2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8명 → 29명 (증 1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1) 총 계: 1,177명 → 1,184명 (증 7)
- 2) 일 반 직 계: 1,173명 → 1,180명 (증 7)
- 3) 6급 이하 계: 1,109명 → 1,116명 (증 7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(기준인건비 반영)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2022. 1. 1. ~ 2022. 1. 21.(20일간)
- 3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177명” 을 “1,184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149명” 을 “1,155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구의회 사무기구” 를 “의회사무기구” 로, “28명” 을 “29명” 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(제4조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		의 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184	1,155			29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80	1,153			27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
6급 이하 계	1,116	1,092			24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3	1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2			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177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149명</u></p> <p>2. <u>구의회사무기구</u>의 정원: <u>28명</u></p> <p>[별표 3] 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</p>	<p><u>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</u> <u>정원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<u>1,184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155명</u></p> <p>2. <u>의회사무기구</u>의 정원: <u>29명</u></p> <p>[별표 3] <u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</u> 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rowspan="2">구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보건소</th> <th row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3">집행기관</th> <th rowspan="2">의회사무기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77</u>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77</u></td> </tr> <tr> <td>정 무 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73</u>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73</u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09</u>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09</u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사무국	보건소	동	집행기관			의회사무기구	총 계	<u>1,177</u>	<u>1,177</u>				정 무 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173</u>	<u>1,173</u>				3급	1	1				4급	8	6	1	1		5급	53	32	2	9	10	6급 이하 계	<u>1,109</u>	<u>1,109</u>				전문경력관 계	2	2				별정직 계	3	3				5급 상당	1	1				6급 상당 이하	2	2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colspan="3">집행기관</th> <th rowspan="2">의회사무기구</th> </tr> <tr> <th>본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84</u>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55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9</u></td> </tr> <tr> <td>정 무 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80</u>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53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7</u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16</u>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092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4</u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</u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</u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colspan="3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사무기구	본청	보건소	동	총 계	<u>1,184</u>	<u>1,155</u>			<u>29</u>	정 무 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180</u>	<u>1,153</u>			<u>27</u>	3급	1	1				4급	8	6	1		1	5급	53	32	9	10	2	6급 이하 계	<u>1,116</u>	<u>1,092</u>			<u>24</u>	전문경력관 계	2	2				별정직 계	3	<u>1</u>			<u>2</u>	5급 상당	1	<u>1</u>				6급 상당 이하	2				<u>2</u>
기관별 직급별							총계	본청	구의회사무국	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집행기관			의회사무기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177</u>	<u>1,17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무 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173</u>	<u>1,17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53	32	2	9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109</u>	<u>1,10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사무기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본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184</u>	<u>1,155</u>			<u>2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무 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180</u>	<u>1,153</u>			<u>2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53	32	9	10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116</u>	<u>1,092</u>			<u>2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3	<u>1</u>			<u>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1	<u>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2				<u>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직급별 비율 :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[별표 2]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름
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경력관
책장준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1%이내	30%이내	10%이상	1%이내
개정후 비율	0.76%	4.48%	19.09%	30.66%	27.62%	16.89%	0.17%

- 인건비 기준액

구분	호봉 기준	21년 기준액	증원
8급	5호봉	3,841천원/월	4명
7급	5호봉	4,185천원/월	3명

※ ① 기본급+②고정수당(정액급식비,대민활동비,명절휴가비,정근수당,직급보조비)+③추가수당(가족수당,시간외수당,출장비,연차수당,특수근무수당)+④복지포인트

- 임금인상율 : 연1.9% 적용(최근 5년 평균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○ 인건비	339,156	345,600	352,166	358,857	
세출	소계	339,156	345,600	352,166	358,857	365,675	1,761,454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국비	-	-	-	-	
시비							
구비	자체재원	339,156	345,600	352,166	358,857	365,675	1,761,454
	의존재원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339,156	345,600	352,166	358,857	365,675	1,761,454

5. 작성자 :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수애 (2627-1012)

현행조례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3.10.31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167명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13.10.31, 2015.5.18, 2019.5.9, 2020.3.25., 2020.12.31., 2021.5.13., 2022.1.1.>
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149명 <개정 2015.5.18, 2019.5.9, 2020.3.25. 2020.12.31., 2021.5.13., 2022.1.1.>
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8명 <개정 2022.1.1.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13.10.31>

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개정 2013.10.31>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10.31, 2013.12.10>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10.31., 2013.12.10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99% 이상	1% 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1%이내	30%이내	10%이상	1%이내

2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 이하
비 율	35% 이내	35% 이내	30% 이상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<u>1,177</u>	<u>1,177</u>			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<u>1,173</u>	<u>1,173</u>			
3급	1	1			
4급	8	6	1	1	
5급	53	32	2	9	10
6급 이하 계	<u>1,109</u>	<u>1,109</u>			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3	3			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2	2			

관 계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2020.3.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3.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